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18가합103847(본소), 2019가합109873(반소) 판결
[대여금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훈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을촌

담당변호사 이다우, 이다정, 채영림

변 론 종 결 2020. 9. 18.

판 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8,966,964원 및 그 중 131,741,844원에 대하여는 2018. 5. 2.부터, 7,225,120원에 대하여는 2020. 5. 6.부터 각 2020.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C에게 강원 홍천군 D 임야 6,241㎡ 및 E 전 216㎡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5. 2. 12. 접수 제28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17. 4. 5.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92,956,4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164,134,0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F대학교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G은행 부천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와 2010년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16. 8.경까지 원고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던 사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다양한 원인으로 별지 1 내지 4 기재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여왔다.

다. 공모주 청약 등

- 1) 원고는 주식회사 H(이하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공모주 청약을 부탁하면서 2011. 5. 17. 피고에게 청약대금 명목으로 1억 4,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1. 5. 17.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1억 4,250만 원으로 H 발행 공모주에 청약한 다음 주당 9,500원에 2,130주를 배정받았고, 2012. 4. 3. 360,400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위 주식 중 2013. 8. 22. 1,000주를 합계 11,457,874원에, 2015. 6. 26. 나머지 1,130주를 합계 17,228,168원에 각 매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28.경 2013. 8. 22.자 주식 매도대금 중 550만 원, 2015. 6. 26.경 같은 일자 주식 매도대금 17,228,168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2) 원고는 I 공모주 청약을 부탁하면서 2011. 5. 24. 피고에게 청약대금 명목으로 560,002,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1. 5. 24.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금원 중 560,001,000원으로 I 공모주에 청약한 다음 주당 28,000원에 141주를 배정받았다.

라. 아파트 매입 관련

- 1) 원고는 2014. 11. 5. 및 2014. 11. 17. J와 안성시 K아파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등 총 10개 호실(이하 10개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K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7억 2,6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K아파트에 관하여 2014. 12. 30.1) 및 2015. 1. 5.2) 원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이 사건 K아파트 매매대금 7억 2,600만 원 및 등기이전비용 1,310만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음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 ① 원고는 이 사건 K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1. 17.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K아파트 매입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갑 제3호증)에 2014. 11. 24. 8,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대출을 받았고, 2014. 11. 25. 2,500만 원, 2014. 11. 25.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7,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위 계좌에서 2014. 11. 25. 이 사건 K아파트 매매대금으로 2억 4,690만 원이, 이 사건 K아파트 등기이전비용으로 1,310만 원이 각 지급되었다.
 - ② 피고는 2014. 10. 7.부터 2014. 10. 28.까지 이 사건 K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

2014. 11. 17. 이 사건 K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K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K아파트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2억 8,910만 원을 수령하였고, 위 금원은 이 사건 K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 명의의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K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3억 원 대여 관련

1) 원고는 2012. 3.경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3억 원은 원고가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마련한 것이다.

2) 피고는 위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2012. 3. 27. V 소유의 서울 금천구 W건물 X호 및 Y호(이하 'W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2. 3.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 5. 7. 피고 소유의 인천 중구 Z 임야 1,983㎡(이하 '인천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매부 AA 앞으로 2012. 4.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17. 4. 5. 원고에게 위 3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2017. 4. 7. 인천 임야에 관하여 AA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2017. 4. 5.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4) 한편, 피고가 위 3억 원을 변제하기 전 W 상가 중 X호는 AB에게 매도되어 2014. 11. 14. AB 앞으로 2014.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W 상가 중 Y호는 AC에게 매도되어 2014. 8. 18. AC 앞으로 2014. 7.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홍성군 토지 관련

1) 피고는 C과 사이에 C이 소유하는 강원 홍천군 D 임야 6,241㎡ 및 E 전 216㎡(이하 '이 사건 홍천군 토지'라고 한다)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홍천군 토지에 관하여 2015. 2. 12. 원고 앞으로 2015.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2 내지 17, 21, 25, 26호증, 을 제1, 3, 10, 25, 35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G은행, AD, AE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대여금 관련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

① 원고는 피고, 피고의 매제 AF, 피고의 모 V, V의 세입자 AG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별지 1 내지 4 대여금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260,605,170원을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합계 11,570,000원만 변제한 후 나머지 249,035,170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

②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AH카드를 별지 5 AH카드 내역과 같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6,074,7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를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13. 3억 원을 대여하면서 인지대 75,000원, 채권매입비 229,520원을 부담하였고, 2013. 5. 20.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인지대 75,000원, 중도상환수수료 230,136원, 그 이자 37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합계 534,656원을 부담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지인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월 75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지인으로부터 위 이자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 오다가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 6개월분에 대한 이자 450만 원(= 75만 원 × 6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내지 이자 합계 260,144,526원(= 249,035,170원 + 6,074,700원 + 534,656원 +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별지 1 내지 4 각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① 인정하는 부분(별지 1 내지 4 대여금 내역 중 ‘인정 대여금’ 부분)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160,853,970원(= 별지 1 부분 127,553,970원 + 별지 2 부분 31,300,000원 + 별지 3 부분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2 대여금 내역 순번 4, 5 기재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자인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없으나,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 또는 일정기간 동거했던 연인관계에 있었고, 계좌로 송금되어 그에 관한 거래내역이 남기 때문에 굳이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을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별도의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나 상당한 기간 동안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1 내지 4 대여금 내역 중 ‘인정 대여금’ 부분을 송금할 무렵 피고에게 위 송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하여야 할 어떠한 채무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야 할 별도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는 별지 1 대여금 내역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원을 지급할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금융거래내역 등)를 확인할 수 없다.

㉔ 피고는 별지 1 대여금 내역 순번 8, 10, 별지 2 대여금 내역 순번 1 기재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매수를 부탁하면서 지급한 것이지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부분 금원 이외에 피고에게 특정 주식의 매입을 부탁하면서 금전을 교부한 적이 있고, 피고가 위 금원 중 일부를 피고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여러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는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하나, 피고가 원고의 부탁으로 청약하여 배정받은 공모주 등의 경우에는 이후 이를 매도하고 그 무렵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등 그 정산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금원으로 매수하였다고 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화발생 등으로 대여금 등의 변제를 요구하기 전까지 이를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원고가 세무조사 등 때문에 당시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에게 주식매수를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는 당시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하면서 불특정 주식의 거래를 부탁하고 나아가 그 정산여부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원은 피고가 자신의 주식거래를 위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㉕ 피고는 별지 1 대여금 내역 순번 9 기재 금원은 피고가 2011. 7. 20. 원고에게 대여한 1,400만 원의 일부 변제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1. 7. 20. 원고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1,4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로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상계의 항변을 인정한다).

㉖ 별지 1 대여금 내역 순번 11, 13에 관하여, 원고는 V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를 위해 필요하다는 피고의 부탁으로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V이 소유하는 상가를 관리하면서 차임 등을 받아왔는데, 원고가 부담하는 위 상가의 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를 입금한 것이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V은 자신에게 부과된 2011. 10. 24. 부가가치세 1,056,000원, 2011. 11. 28. 종합소득세 1,557,970원을 각 납부한 점,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원고가 V에게 송금한 금원과 일치하는 점, 원고가 2011. 10.~11. 전후로 V이 소유하는 상가의 임대료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V의 위 세금 납부를 위해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와 피고는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금전을 주고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이 부분에 관한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명목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중 일부 생활비 명목의 금원 등을 제외한 이 부분 금원의 경우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반환 내지 정산을 전제로 하는 거래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② 기각하는 부분(별지 1 순번 6, 7, 17 내지 19, 28, 별지 2 순번 2, 별지 4)살피건대, 갑 제1, 2, 15호증, 을 제15,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은행, AD에 대한 2020. 6. 10.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원고는 별지 1 대여금 내역 순번 6, 7 기재 금원에 관하여 피고가 피고의 모 V의 세입자 AG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돈을 대신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AG에게 2011. 4. 1. 100만 원, 2011. 4. 4. 1,4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AG가 피고의 모 V의 세입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는 별지 1 대여금 내역 순번 17 내지 19 기재 금원은 피고가 2013. 3. 27. 원고에게 공모주 청약 자금으로 대여한 4,200만 원의 변제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2013. 3. 27. 원고 명의의 AD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금원은 원고의 공모주 청약에 사용된 사실, 원고는 2013. 3. 28. 위 AD 계좌에서 위 4,2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바, 이 부분 금원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변제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피고는 별지 1 대여금 내역 순번 28 기재 금원은 V 소유의 상가의 매도대금을 원고가 수령한 뒤 이를 AF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V이 소유하던 W 상가는 AB에게 매도되었고, AB은 2014. 10. 30.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점,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AF 명의 계좌로 4,000만 원,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이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V의 AB에 대한 W 상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AF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4. 10. 30. AF 명의 계좌로 송금한

4,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다가 피고가 위와 같이 W 상가 매각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자 위 금원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역에서 삭제하였다).

○ 별지 2 대여금 내역 순번 2 기재 금원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의 계좌에서 2011. 7. 22. 09:15 현금 300만 원이 지급된 사실, AF의 계좌에서 2011. 7. 22. 09:15 현금 7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이 부분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피고는 별지 4 대여금 내역 기재 금원 중 3,000만 원은 피고가 2011. 2. 8. V를 통해 원고에게 대여한 3,000만 원의 변제금이라고 주장하고, V 명의의 계좌에서 2011. 2. 8. 원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2. 8. V이 송금한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4. 1. 500만 원, 2012. 2. 7. 500만 원, 2012. 3. 9. 2,000만 원을 V에 송금하면서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 금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1. 4. 1. 500만 원, 2012. 2. 7. 500만 원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2012. 3. 9. 2,000만 원은 W 상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면서 형식적으로 계약금을 받은 내역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1. 4. 1. 500만 원, 2012. 2. 7. 500만 원, 2012. 3. 9. 2,000만 원을 V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V 명의의 계좌 ‘적요’란에는 2012. 3. 9.자 2,000만 원에 대하여 계약금이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금원이 2011. 2. 8. V이 송금한 3,000만 원의 변제금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의 주장과 같은 변제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원고는 별지 4 대여금 내역 기재 금원 중 5만 원은 원고가 V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2011. 2. 14. V 계좌에 5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금원이 원고가 V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는 없다.

(2) 별지 5 AH카드 관련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① 인정하는 부분(순번 2 내지 10)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허락 하에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것을 전제로 원고 명의의 AH카드로 별지 5 AH카드 내역 순번 2 내지 10 기재 금원을 결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AH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결재대금 합계 4,560,2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기각하는 부분(순번 1)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별지 5 AH카드 내역 순번 1 기재 금원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인지대 등 청구 부분

① 인정하는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2. 3. 13. 3억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위 3억 원을 G은행에서 대출하여 마련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G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부담한 인지대 75,000원, 채권매입비 229,520원은 위 3억 원의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임은 인정하고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지대 75,000원, 채권매입비 229,520원 합계 304,52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기각하는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2013. 5. 20.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위 대여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인지대 75,000원, 중도상환수수료 230,136원을 부담하고, 그 이자 37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미지급 이자 청구 부분 - 기각

살피건대, 을 제2,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5. C으로부터 6,000만 원 및 그 이자 전액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지인에게 교부된 6,000만 원에 관한 원리금은 모두 변제받았다고 추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작성해 온 위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피고에게 미지급 이자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가 나중에 준다고 하여 일단 위 확인서에 서명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공모주 관련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H, AI, AJ 발행주식을 매입하였으므로 위 주식의 배당금, 매각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주식에 관하여 수령한 배당금이나 이를 매각한 뒤 수령한 그 매각대금 50,422,922원[= H 발행주식 1,000주 매각대금 중 미반환 5,957,874원 + H 배당금 360,400원 + AI 300주 매각대금 중 미반환 5,664,648원 + AJ 발생주식 1,020주 38,44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422,9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I 공모주를 3,950,000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위 매입금 3,9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H 공모주 관련 청구 부분- 인정

살피건대, 원고는 H 공모주 청약을 부탁하면서 2011. 5. 17. 피고에게 청약대금 명목으로 1억 4,2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1. 5. 17. 원고의 부탁으로 H 발행 공모주에 청약한 다음 주당 9,500원에 2,130주를 배정받은 사실, 2012. 4. 3. 360,400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 위 주식 중 2013. 8. 22. 1,000주를 함께 11,457,874원에, 2015. 6. 26. 나머지 1,130주를 함께 17,228,168원에 각 매도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주식매각대금 11,457,874원 중 5,500,000원과 17,228,168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H 발행주식의 배당금 및 매각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는 위 금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2,728,168원(= 5,500,000원 + 17,228,168원)을 제외한 나머지 6,318,274원(= 매각대금 중 미반환금 5,957,874원 + 배당금 수령액 36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H에서 수령한 배당금 360,400원은 원고와 동거에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위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거나 위 금원이 원고와의 생활비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AI 발행주식 관련 청구 부분 - 기각

살피건대, 이 법원의 AD에 대한 2018. 6. 1.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3. 9. 2. AD 계좌에서 보유하던 AI 발생주식 300주를 모두 11,204,648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AI 발행주식에 관하여 언제, 얼마를 지급하면서 AI 발생주식 몇 주를 매수할 것을 부탁하였는지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5,540,000원을 초과하여 위 매도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3) AJ 발행주식 관련 청구 부분 - 기각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AJ 발행주식에 관하여 언제, 얼마를 지급하면서 AJ 발생주식 몇 주를 매수할 것을 부탁하였는지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AJ 발행주식의 매수를 부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4) I 발행주식 매입대금 반환 청구 부분 - 기각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부탁에 따라 I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여 주당 28,000원에 141주를 배정받았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I 공모주를 청약받음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나아가 위 I 공모주 그 자체 내지 이를 매각하고 수령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의 반환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I 공모주 매입대금을 반환할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K아파트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매수한 이 사건 K아파트에 대하여 그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172,900,000원 및 차임 5,942,723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차임 중 403,741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전세보증금 및 나머지 차임 합계 178,438,9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먼저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이 사건 K아파트의 임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K아파트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및 차임을 수령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돈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정당한 반환 요구를 거부하였다면 불법행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곧바로 위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K아파트를 임대하여 전세보증금 및 차임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곧바로 위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

○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1 대여금 내역 순번 12, 14, 15, 23, 26, 29, 35, 37, 41의 합계 1,187만 원3) 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 나아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 26. 170만 원, 2014. 6. 25. 50만 원, 2016. 10. 31. 500만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이 사건 소장(17면), 2018. 11. 8.자 준비서면(4면)을 각 진술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진술을 원용하는 취지의 2019. 5. 30.자 준비서면(8, 16면)을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1. 26. 170만 원, 2014. 6. 25. 50만 원, 2016. 10. 31. 500만 원 등 합계 72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선행자백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선행자백이 성립한 이후인 제2회 변론기일에서 기존에 변제받았음을 전제로 작성한 대여내역 표에서 2012. 1. 26. 170만 원, 2014. 6. 25. 50만 원을 제외한 2019. 9. 19.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제7회 변론기일에서 2012. 1. 26. 170만 원은 생활비, 2014. 6. 25. 50만

원은 해외여행 경비, 2016. 10. 31. 500만 원은 피고의 지시로 AK에 보낸 돈4) 이라는 취지(2020. 8. 7.자 준비서면 2~3면)라고 앞서 본 선행자백과 모순된 진술을 함으로써 선행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선행자백도 재판상 자백의 일종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후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선행자백한 불이익한 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 법원은 그 자백사실에 구속되어 이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되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59535 판결 등 참조), 다만 선행자백을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선행자백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은 합계 1,907만 원(= 1,187만 원 + 72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내지 공모주 관련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9,0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2,966,964원(= 별지 1 내지 4 대여금 160,853,970원 + AH카드 대여금 4,560,200원 + 인지대 등 304,520원 + H 발행주식 매각대금 및 배당금 6,318,274원 - 변제금 19,0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H 발행주식 관련 변제 주장

피고는 H 발행주식 매각대금은 2013. 8. 28. 550만 원, 2015. 6. 29. 17,228,168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H 발행 공모주에 청약하여 배정받은 2,130주 중 2013. 8. 22. 1,000주를 합계 11,457,874원에, 2015. 6. 26. 나머지 1,130주를 합계 17,228,168원에 각 매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28.경 2013. 8. 22.자 주식 매도대금 중 550만 원, 2015. 6. 26.경 같은 일자 주식 매도대금 17,228,168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H 발행주식 2,130주의 매각대금 합계 28,686,042원 중 원고에게 22,728,168원(= 5,500,000원 + 17,228,168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5,957,874원(= 28,686,042원 - 22,728,168원)은 반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H 발행주식과 관련한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5 AH카드 내역 기재 대여금 변제 주장

피고는 위 AH카드 사용대금에 대하여는 원고에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상계항변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1. 5. 26. 61,522,000원, 2011. 7. 20. 14,000,000원, 2012. 1. 26. 1,700,000원, 2014. 6. 25. 500,000원, 2015. 1. 26. 1,000,000원, 2015. 6. 29. 17,228,168원, 2015. 7. 31. 5,000,000원, 2016. 10. 31. 50,000,000원 합계 105,950,16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를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공모주 매각대금, 배당금 순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2011. 5. 26. 61,522,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는 I 공모주에 청약한후 남은 잔액의 반환으로 2011. 5. 26. 합계 556,052,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 부분 금원은 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2. 1. 26. 1,700,000원, 2014. 6. 25. 500,000원 및 2016. 10. 31. 5,000,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금원에 관하여는 앞서 가. 4)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변제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선행자백이 성립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라) 2015. 1. 26. 1,000,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 26.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가 동거생활을 하던 기간 중에 지급된 돈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2015. 6. 29. 17,228,168원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금원은 피고가 2015. 6. 29. 원고에게 H 발행주식 1,030주 매각대금 반환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2015. 7. 31. 5,000,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2015. 7. 31. 원고 명의 계좌에 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금원을 어떤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않는 이상 위 주장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2011. 7. 20. 14,000,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2011. 7. 20. 원고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송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하여야 할 어떠한 채무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야 할 별도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추단되는바(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1. 7. 13. AL에게 800만 원, AM에게 600만 원을 각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4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1. 7. 20. 원고에게 지급한 위 1,400만 원은 이를 변제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L, AM에게 지급한 돈이 피고의 부탁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1,4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자가 언제라도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090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대여금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2011. 7. 20.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2011. 7.

20. 상계적상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6. 29.자 준비서면이 2020. 6. 29. 원고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2011. 7. 20.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2011. 7. 20.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8,966,964원(= 152,966,964원 - 14,000,000원) 및 그 중 131,741,844원(= 138,966,964원 - 7,225,1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5. 2.부터, 7,225,120원(= 별지 3 대여금 내역 2,000,000원 + 별지 5 AH카드 내역 4,560,200원 + 인지대 등 304,520원 + H 배당금 360,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5. 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서 추가한 별지 3 대여금 내역, 별지 5 AH카드 내역, 인지대 등, H 배당금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피고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이행을 구하기 전에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1) K아파트에 관한 투자 정산금 청구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에 공동투자하기로 하고, 2014. 11. 5. 주식회사 J로부터 K아파트를 매수하여 모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K아파트 매입대금 7억 3,910만 원(= 매매대금 7억

2,600만 원 + 등기비용 1,310만 원)에서 K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8,910만 원을 공제한 4억 5,000만 원 중 원고가 2억 7,500만 원을, 피고가 1억 7,500만 원을 각 부담하였으며, 이후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인상분 1억 1,090만 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지분의 정산으로 K아파트 정산금 131,872,222원[= (매입비용 7억 3,910만 원 - 현재 K아파트 전세보증금 4억 원) × 1억 7,500만 원/4억 5,000만 원]과 K아파트 전세보증금 인상분 1억 1,090만 원에 대한 정산금 32,261,857원[= 원고가 수령한 100,034,080원 - 원고 지분 67,772,223원(= 110,900,000원 × 1억 7,500만 원/4억 5,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홍천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홍천군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홍천군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5. 2. 12. 접수 제28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피고가 위 3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C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서 C에게 이 사건 홍천군 토지에 관하여 마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K아파트 관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K아파트에 공동투자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홍천군 토지 관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홍천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홍천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홍천군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여부

살피건대, 피고는 2012. 3.경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는 위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2012. 3. 27. V 소유의 W 상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2.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 5. 7. 피고 소유의 인천 임야에 관하여 원고의 매부 AA 앞으로 2012. 4.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준 사실, 피고는 위 3억 원을 변제하기 전 W 상가 중 X호는 AB에게 매도하여 2014. 11. 14. AB 앞으로 2014.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W 상가 중 Y호는 AC에게 매도하여 2014. 8. 18. AC 앞으로 2014.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는 C이 소유하는 이 사건 홍천군 토지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15. 2. 12. 원고 앞으로 2015.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는 원고에 대한 3억 원을 변제하기 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W 상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담보부족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는바, C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홍천군 토지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홍천군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3억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에 매수한 부동산을 별다른 조건 없이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는 2017. 4. 5. 원고에게 위 3억 원을 모두 변제한 직후 인천 임야에 관하여 AA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만을 말소하였을 뿐 이 사건 홍천군 토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피고와 원고가 상당한 기간 사실혼 내지 사실혼에 가까운 연인관계에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면서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한 이후에도 이 사건 홍천군 토지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이례적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3억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홍천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담보채무의 변제

피고가 2017. 4. 5. 원고에게 위 3억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 사건
홍천군 토지에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C을 대위하여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C에게 2017. 4. 5. 변제를 원인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유형, 판사 김병진, 판사 김보경

1. 대여금 내역(갑1)

계좌번호: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구] (계좌번호 3 생략)]

순번	일자	적요	원고 주장 대여금(원)	인정 대여금(원)	원고 인정 변제금(원)
1	2010-05-07	AF	100,000	100,000	
2	2010-05-17	AF	3,600,000	3,600,000	
3	2010-08-23	AF	2,000,000	2,000,000	
4	2010-12-20	AF	15,500,000	15,500,000	
5	2011-03-11	AF	0	0	
6	2011-04-01	AG	1,000,000	0	
7	2011-04-04	AG	14,000,000	0	
8	2011-06-07	AF	70,000,000	70,000,000	
9	2011-08-16	AF	12,000,000	12,000,000	
10	2011-08-16	B	16,000,000	16,000,000	
11	2011-10-24	V	1,056,000	1,056,000	
12	2011-11-25	B			5,300,000
13	2011-11-28	V	1,557,970	1,557,970	
14	2012-05-17	B			230,000
15	2012-05-31	B			1,470,000
16	2012-11-12	AF	1,500,000	1,500,000	
17	2013-03-28	AF	12,700,000	0	
18	2013-03-28	B	9,500,000	0	
19	2013-03-29	B	20,101,200	0	
20	2013-03-29	B	50,000	50,000	
21	2013-04-25	AF	500,000	500,000	
22	2013-05-29	AF	1,500,000	1,500,000	
23	2013-09-10	B			1,500,000
24	2013-09-13	AF	100,000	100,000	
25	2013-10-01	AF	210,000	210,000	
26	2014-02-25	B			2,600,000
27	2014-03-03	AF	120,000	120,000	

28	2014-10-30	AF	10,000,000	0	
29	2014-11-05	AF			120,000
30	2014-11-14	AF	200,000	200,000	
31	2014-12-01	AF	100,000	100,000	
32	2014-12-04	AF	100,000	100,000	
33	2014-12-11	AF	200,000	200,000	
34	2015-02-17	AF	200,000	200,000	
35	2015-02-25	B			200,000
36	2015-03-06	AF	160,000	160,000	
37	2016-03-07	B			150,000
38	2016-05-19	B	200,000	200,000	
39	2016-05-21	B	500,000	500,000	
40	2016-05-21	B	100,000	100,000	
41	2015-07-02	AF			300,000
합계			194,855,170	127,553,970	11,870,000

끝.

2. 대여금 내역(갑2)

계좌번호: G은행 (계좌번호 4 생략)

순번	일자	적요	원고 주장 대여금(원)	인정 대여금(원)	원고 인정 변제금(원)
1	2011-07-13	대체	30,000,000	30,000,000	
2	2011-07-22	현금	3,000,000	0	
3	2014-10-28	AF	0	0	
4	2015-05-06	AF	1,000,000	1,000,000	
5	2015-07-31	AF	300,000	300,000	
합계			34,300,000	31,300,000	

끝.

3. 대여금 내역(을24)

계좌번호: G은행 (계좌번호 5 생략) (예금주: AF)

순번	일자	적요	원고 주장 대여금(원)	인정 대여금(원)	원고 인정 변제금(원)
1	2010-07-27	AN	2,000,000	2,000,000	
합계			2,000,000	2,000,000	

끝.

4. 대여금 내역(갑26)

계좌번호: G은행 (계좌번호 6 생략) (예금주: V)

순번	일자	적요	원고 주장 대여금(원)	인정 대여금(원)	원고 인정 변제금(원)
1	2011-02-14	대체	30,050,000	0	
합계			30,050,000	0	

끝.

5. AH카드 내역(갑27)

순번	일자	적요	원고 주장 대여금(원)	인정 대여금(원)	원고 인정 변제금(원)
1	2012-04-28	AO	1,514,500	0	
2	2012-07-18	AP	585,000	585,000	
3	2013-01-18	AP	585,000	585,000	
4	2013-03-24	AQ	60,000	60,000	
5	2013-03-24	AQ	30,000	30,000	
6	2013-03-24	AQ	689,000	689,000	
7	2013-07-17	AP	585,000	585,000	
8	2014-02-03	AP	1,080,000	1,080,000	
9	2014-02-24	AR	439,900	439,900	
10	2014-06-06	AS	506,300	506,300	
합계			6,074,700	4,560,200	

끝.

1) L호, M호, N호, P호, Q호

2) O호, R호, S호, T호, U호

3) 원고는 위 금원의 합계가 1,157만 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2면),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4) 원고는 기존에 2015. 7. 31.자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의 지시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을 그대로 AK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는데(2018. 8. 23.자 준비서면 18면, 2018. 11. 8.자 준비서면 2면, 갑 제1호증 94면), 이 부분 주장을 착오로 2016. 10. 31.자 500만 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